#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(박홍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60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8.

발 의 자: 박홍배·윤준병·정태호

김재원 · 김태년 · 김현정

김우영 • 박정현 • 서미화

민병덕 • 이광희 • 이용우

박지원 • 이연희 • 박해철

강훈식 • 문진석 • 복기왕

김한규 · 한준호 · 윤후덕

고민정 • 조승래 • 염태영

정진욱 의원(25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

5월 1일은 세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는 노동기념일인 메이데이(MAY DAY)로 대한민국도 1923년 5월 1일을 시작으로 해방 이전부터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었음. 하지만 1958년 3월 10일로 날짜가 변경되고, 1963년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면서 '근로자의 날'이라는 명칭으로 유지되고 있음.

하지만 '근로자'라는 용어는 '부지런히 일하는 사람'이라는 의미로 국가 및 사업주 통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수동적인 역할을 부여 하고 있음.

이에 '근로'라는 용어 대신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담은 '노동'

이라는 용어를 담아 원래의 이름인 '노동절'로 기념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.

법률 제 호

#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

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, 이 날을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유급휴일 (有給休日)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3. 「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노동절
- ②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4호 중 "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"을 "「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노동절"로 한다.

③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4호 중 "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"을 "「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노동절"로 한다.

④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4호 중"「勤勞者의 날 制定에 관한 法律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"을 "「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노동절"로 한다.

⑤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제1호 중 "근로자의 날"을 "노동절"로 한다.

⑥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3. 「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노동절
-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4조제2항 단서 중 "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"을 "「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노동절"로 한 다.

⑧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3. 「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노동절
- 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4항 중 "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"을 "「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노동절"로 한다.

제19조제4항 중 "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"을 "「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노동절"로 한다.